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지난 7월 14일 산업자원부령 제139호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는 우리 협회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 개정되어 가스시공업계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스시공업계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 바란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부 이 용 권 부장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의 공급이 거절된"을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가스사용자가 설치·보수 및 교체하여야 하는 사용자공급관·내관·연소기"를 "내관·연소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제20조제1항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5종"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으로, "온수보일러시공확인서"를 "가스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로, "또는 제21조제2항의"를 " 및 제20조의2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공기록 및 자체검사기록중"을 "시공기록중"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공사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이 조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다.

2.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시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사용예정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검사대상기기의 월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증설하는 변경공사"를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사용가스시설중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기준"을 "검사항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검사기준"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제2호나목중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를 "수요자에게"로 하고, 동조제6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공사(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중 "선임신고대상등"을 "선임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4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제62조의6중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5항"을 "제21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유치원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터·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증설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중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를 "수요자에게"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1) 관경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증설하는 공사

별표 5 제3호가목(1)중 "배관(사업소 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배관"으로 하고, 동호다목(5)(나)의 표의 상용압력란중 "2kg/cm<sup>2</sup>"을 각각 "0.2MPa"로, "10kg/cm<sup>2</sup>"을 각각 1MPa"로 하며, 동호다목(5)(나)의 표의 공지의 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지의 폭
5m
9m
15m

별표 5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사업소 안의 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사업소안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가목, 나목, 다목(1)(나) 내지 (사)·(5), 라목 내지 카목, 하목을 적용한다.

별표 5 제4호파목중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시에"를 "정기검사시에"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의 제목 "급경사지의 붕괴예방

울타리등의 설치"를 "경계표지 및 울타리 등의 설치"로 한다.

별표 6 제6호가목의 제목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를 "액화가스저장탱크"로 하고, 동호가목(2)중 "은백색도료"를 "은색·백색 도료"로 하며, 동목(11)(가) 본문 및 단서중 "액화석유가스"를 각각 "가스"로 한다.

별표 6 제8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관등의 재료 및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별표 6 제8호가목(4)(가)중 "배관(사업소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배관"으로 하고, 동목(8)의 단서중 "건축물구조상 그 위치에 밸브설치가 곤란한"을 "보호상자안에 설치하는"으로 하며, 동목(14)(다)중 "절연전선"을 "절연전선(가스계량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8호가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사업소안의 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사업소안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1), (2), (7), (9) 내지 (12), (14), (16), (17)을 적용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등의 재료 및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별표 7 제1호라목(1) 단서중 "스테인레스강관·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을 "스테인레스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고, 동목(3)중 "절연전선"을 "절연전선(배관이음부와 가스누출차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마목의 단서중 "건축물구조상 그 위치에 밸브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을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으로 하고, 동호사목(1)중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을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8의 제목중 "검사항목기준"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표의 가목(3)의 검사항목란중 "(2)라)①(검지공에 한함)·(3)다)"를 "(3)다)"로 하며, 동호의 표의 나목(8)의 대상시설란중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를 "수요자에게"로 하고, 동목(8)의 검사항목란중 "(4)라)(검지공에 한함)·(5)(매설위치표시에 한함)"를 "(5)(매설위치표시에 한함)"로 한다.

별표 14 제4호의 표중 가목의 (4)란 내지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5)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인력인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에 한한다)

- 및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6) 온수보일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및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별표 17의 제목 "사고의 통보방법등"을 "사고 등의 통보방법 등"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중 "사고발생"을 "사고 등의"로 하며, 동표 제1호의 표의 제4호의 사고의 종류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공급중단, 인명대피 등이 발생한 사고(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비 고
1. 공사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었으나 즉시 조치가 완료된 것은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하여 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의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



서류란 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서식의 뒤쪽중 "시·도지사"를 "시·군·구"로, "허가증"을 "승인서"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의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중 "귀하"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8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도면(1/500~1/600 축적)"을 "도면"으로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

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완성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